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62회 1차 정례회

검토 보고서

2023. 6. 13.(화)

검 토 안 건	발 의
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	구청장



복지도시위원회 (전문위원 장홍용)

"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"

검 토 보 고

(보고자 : 전문위원 장홍용)

1. 제안경위

○ 제안자 : 마포구청장(가족행복지원과)

○ 제안일 : 2023. 5. 19.

○ 회부일 : 2023. 5. 25. (의안번호 : 23-92)

2. 제안이유

○ 마포여성동행센터의 시설 사용허가, 사용료 징수, 사용료 등의 감면·할인 반환규정 등 필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도모 하고자함

3. 주요내용

- 센터 내 시설 사용허가, 사용료 징수, 사용료 등의 감면·할인 및 반환규정 신설(안 제51조 ~ 제55조)
- 내용에 맞게 조항 재배치 (안 제56조)
- 불필요한 조항 삭제: 조례 제52조(시행규칙)

- 조문 신설에 따른 별지서식 규정
 - 〈별표 1〉 사용료 징수 범위 (제53조 관련)
 - 〈별표 2〉 사용료 등 감면 (제54조 관련)
 - 〈별표 3〉수강료 반환기준 (제55조제2항 관련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양성평등기본법」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」
-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입법예고 : 2023. 4. 20~5. 10.(제출의견 없음)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마포구청장이 발의하여 복지도시위원회로 회부된 개정조례안으로 마포여성동행센터의 시설 사용허가, 사용료 징수, 사용료 등의 감면·할인 반환규정 등 필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 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
 - 안 제51조에서는 마포여성동행센터 내 시설 사용허가를 신설하였고
 - 안 제52조에서는 사용허가의 취소 및 중지를 신설하였으며,
 - 안 제53조부터 안 제55조까지는 사용료 등의 감면· 할인·반화 등을.

- 그리고 안 제53조부터 안 제55조 관련 사용료 징수범위, 사용료 등 감면, 수강료 반환기준에 따른 별지서식을 신설한 것임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양성평등기본법」제5조, 「성별영향평가법」제2조제1호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바가 없으며, 사용료 등 결정은 2023년 제1차 마포구 물가대책위 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마포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3회 연속 여성친화도시에 선정된 바, 이러한 지역특성을 살려 단순한 프로그램 운영이 아닌 즉, 각종 문화센터와는 차별화 될 수 있는 사회적 약자인 노인,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 등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양성평등 인식확산 위주의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참고자료

1. 관련법령

양성평등기본법

- 제5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기관등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 ·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.

성별영향평가법

- 제**2**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8. 3. 27.>
 - 1. "성별영향평가"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 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 - 2. "중앙행정기관"이란 「정부조직법」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.
 - 3. "지방자치단체"란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시·광역시· 도·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말한다.

2. 제1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공문

人比此时至时经时至



마포구



수신자 수신자참조

(경유)

제목 2023년 제1차 마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 통보

- 1. 경제진흥과-10779(2023. 3. 6.)호와 관련입니다.
- 2. 2023년 제1차 마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 합니다.

가. 심의일자: 2023. 3. 3.(금)

나. 심의방법: 대면 심의

다. 심의결과

연 번	부 서 명	안 건 명	심의 결과
1	주차관리과	마포구 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요금 상향 조정(안)	원안 의결
2	가족행복지원과	마포동행센터 사용료 등 결정(안)	원안 의결

붙임 1. 2023년 제1차 마포구 물가대책위원회 결과 보고 1부.

2. 심의의결서 1부. 끝.

마포구청장

수신자 주차관리과장, 가족행복지원과장

★주무관 생활경제팀장 경제진흥과장

협조자

시행 경제진흥과-10945 (2023.03.06.) 접수 가족행복지원과-6431 (2023.03.07.) 우 03937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212(성산동) /http://www.mapo.go.kr 전화 02)3153-8562 /전송 02)3153-8589 / shs80@mapo.go.kr / 비공개(6)